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2가단206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이경수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인데, C의 배우자인 D가 2018. 9. 23. 사망한 후 C이 자신의 상속분인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 중 1인인 피고에게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2018. 11. 12. 대구가정법원에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9. 1. 22.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724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로써 C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C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결국,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의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별지